

학사내규 개정(안) 심의서

1. 규정 개정 취지

- 「고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학칙」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
- 현행에 따른 졸업시험 실시를 위한 규정 개정
- 입대휴학자의 복학 학기를 위한 규정 개정

2. 개정 주요 내용(주요 골자)

-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대체 운영 근거 마련
- 잦은 학제개편으로, 일부 학과(전공) 졸업시험 문제 출제 담당 전임교원의 부재로 인한 규정 개정
- 전역일에 따른 복학으로 인하여 본인과 맞지 않는 학기에 복학하게 되는 현상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

3. 신규대조표 (붙임 참조)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제45조(수업)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6.15.></p>	<p>제45조(수업) ①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6.15.><개정 2021.04.00.> ②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,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4.00.></p>	<p>□「고등교육법」 제22조(수업 등) ②항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 정비</p>
<p>제73조(졸업시험 실시) ①졸업시험을 실시하는 학과는 소속 학과(전공) 전임교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문제의 출제, 채점 및 평가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. ②졸업논문 심사의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. ③각 학부장은 학과(전공)별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결과를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자율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을 부과하지 않는다.</p>	<p>제73조(졸업시험 실시) ①졸업시험을 실시하는 학과는 소속 학과(전공) 전임교원이 시험문제의 출제, 채점 및 평가를 담당한다. 다만, 학제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학과(전공) 전임교원이 부재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4.00.> ②졸업논문 심사의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. ③각 학부장은 학과(전공)별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결과를 졸업예정학기의 종강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자율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을 부과하지 않는다.</p>	<p>□학제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소속 학과(전공) 전임교원의 부재로, 시험위원회 구성 불가에 따른 규정 개정</p>
<p>제80조의1(입대휴학) ①입영명령서(영장)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소정양식의 군입영신고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 ②입대휴학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적되며 일반휴학기간 중에 입대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입대휴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 ③입대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20.02.17.></p>	<p>제80조의1(입대휴학) ①입영명령서(영장)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소정양식의 군입영신고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 ②입대휴학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자는 제적되며 일반휴학기간 중에 입대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입대휴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 ③입대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 후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기간으로 한다.</p>	<p>□전역일에 따른 복학으로 인하여, 본인이 휴학한 학기와 맞지 않는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현상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</p>

<p>④입대휴학한 자가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학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</p>	<p><개정 2021.04.00.> ④입대휴학한 자가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학지원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</p>	
<p>제81조(복학)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(전역 예정자 포함) 또는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복학원과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에 복무 중인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,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. <개정 2020.02.17.></p> <p>1. 질병휴학자: 건강진단서 1통 2. 입영휴학자 가. 전역증(또는 전역예정증명서) 사본 2통 나. 주민등록초본 2통</p> <p>②입대휴학한 자는 전역일 기준 학기말까지 복학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할 수 없는 자는 교학지원처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02.17., 2020.06.15.></p> <p>③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의 수업일수가 학기의 3/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</p> <p>④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. 다만, 3항의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</p>	<p>제81조(복학)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(전역 예정자 포함) 또는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복학원과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에 복무 중인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,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. <개정 2020.02.17.></p> <p>1. 질병휴학자: 건강진단서 1통 2. 입영휴학자 가. 전역증(또는 전역예정증명서) 사본 2통 나. 주민등록초본 2통</p> <p>②입대휴학한 자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내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대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할 수 없는 자는 교학지원처에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02.17., 2020.06.15.><개정 2021.04.00.></p> <p>③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의 수업일수가 학기의 3/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</p> <p>④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. 다만, 3항의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</p>	<p>본인 전역일이 속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내 복학함에 따라 1년 이내가 아닌, 입대휴학 기간 만료 전 일반휴학 신청함으로 규정 개정</p>

한다. <신설 2020.02.17.>	한다. <신설 2020.02.17.>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제45조(수업), 제80조1(입대휴학), 제81조(복학)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</p>	<p>☐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에 따라 소급 적용</p> <p>☐학칙 개정 이전에 입대휴학한 학생에게도 적용</p>